

대 법 원

제 2 부

결 정

사 건 2006모428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

재 항 고 인 김명호
(신 청 인)

- 피 의 자
1. 이광범
 2. 이상훈
 3. 이혁우
 4. 홍성무

원 심 결 정 서울고등법원 2006. 7. 27.자 2006초기224 결정

주 문

재항고를 기각한다.

이 유

재항고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·법률·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.

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

정한다.

2006. 9. 25.

재판장 대법관 김능환

 대법관 김용담

주 심 대법관 박시환

 대법관 박일환